

파주시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81
----------	-----

제출년월일 : 2000. 6. 29.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정이유

농가 농기계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구입지원 축소방침으로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구성 있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대형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구입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관련 공동이용단체에 대형·고가 농기계를 임대함 (조례안 제3조, 제4조)
- 농기계임대사업자는 영세농가 및 노령, 부녀화농가에 농작업대행을 실시함 (조례안 제2조, 제8조)
- 농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대행수수료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 및 규칙에 따름 (조례안 제7조, 제8조)

파주시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작업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라 함은 내구성있는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등 공동이용단체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농작업대행”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 받은 임차인이 영세농가나 노령·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임대기준) ① 시장은 임대할 농기계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여건·내구성·이용효율성·경작규모 등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기준에는 농기계의 본체 및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세부기준 및 부속작업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대대상자선정) ①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농기계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기계임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파주시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대계약)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임대농기계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기계가 항상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수리·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모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제2호서식)

2. 농작업대행 관리대장 (별지제3호서식)

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별지제4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제2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제5호서식)

- 제7조 (농기계 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임대료를 정함에 있어 농기계 가격, 내용년수, 임대기간, 지역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은 농기계임대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전액을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수리·부품비 등을 감안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농작업대행 수수료)** ① 임대사업자는 영세농가나 노령·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자가 영세농가 등에 대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사전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농작업대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농작업 대행 수수료의 징수범위를 정함에 있어 농기계의 기종, 경지정리여부, 지목 등 농작업의 여건과 일반농가의 수수료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간)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영농기간을 고려하여 1년단위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기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와 대여금지) ①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임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농기계사후관리) ①시장은 기존 임대농기계의 내용년수 경과시 매각 또는 폐기처분되었을 때에는 자체 자금 또는 예산으로 동일 수량의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점검 등) 시장은 임차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관리상태를 수시 지도·감독하여 불량한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축산과 ☎ 940-4603
입 안 자	농축산과장	박 신 규
	유통 담당	김 영 선
	담 당 자	이 진 홍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사 업 장 소 재 지			
	법인 (주민)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

표 시 사 항

농기계창고 보 유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확보	환경규제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확인	자본(출자)금	조합원또는 사원참여수
m'	명	해당읍면동장확인	백만원	명

농기계임대사업 신청내역

구분	트랙터	콩정선·선별기	콩수확기	이앙기
제1회망	대	대	대	대
제2회망	대	대	대	대
제3회망	대	대	대	대

(별첨)

임대사업신청 관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작목반조직확인서(농협경유), 농기계수리요원자격증, 농업 진흥·환경규제지역확인서(읍면동장경유)
----------------	---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대표자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

임대농기계관리대장

관리번호 :

기종명	제작회사	모델명	규격	구입일자	구입가격	반납일

주요정비내역

년월일	정비내역	소요금액(원)	비고(정비자)

농작업대행관리대장

년월일	농작업대행자		임대기간		주작업명	수수료	비고
	주소	성명	부터	까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약 년월일	임차인		임대기계 (기종 및 대수)				임대기간	임대료 (원)	반납예정 일	반납확인
		주소	성명	본체	대수	작업기명	대수				

임대료수납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기종		임대료 수납액 (원)	비고
		주소	성명	부터	까지	기대명	수량		